

공 보

제676호 2018. 12. 19.(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150호 단지봉마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8-151호 마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5

거창군 고시 제2018-152호 도로명주소 고시 6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1486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

거창군 공고 제2018-1487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3

거창군 공고 제2018-1497호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18

거창군 공고 제2018-1509호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

거창군 공고 제2018-1523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9

거창군 공고 제2018-1525호 거창군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32

의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단지봉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서』에 의거 ‘단지봉마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 승인하고,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거창군수

1. 사 업 명: 단지봉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단지봉마을권역의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단지봉마을권역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3. 면 적: 3,835ha (농경지 405ha, 임야 3,233ha, 기타 197ha)
4. 사 업 구 역: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용암리, 박암리 일원
5. 가구 / 인구: 310호(농가 247호, 비농가 63호), 인구 564명
6. 사 업 비: 4,400백만원(국비 3,080, 도비 396, 군비 924)
 - 당초 : 자부담 136백만원정도(사업비 확정 후 정산)
 - **변경** : 자부담 87백만원정도(사업비 확정 후 정산)
7. 사 업 기 간(**변경**)
 - 당초 : 2014. 01. ~ 2018. 12.
 - **변경** : 2014. 01. ~ 2019. 06.
8. 시 행 자: 거창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9. 주요사업개요(**변경**)
 - 기초생활기반확충 : 주민행복복지센터, 행복마을회관, 행복마을안길정비 등
 - 행복마을 안길정비공사 1개구간 사업중복으로 물량감소

- 지역소득증대사업 : 농산물가공 및 선별장
 - 지역경관개선사업 : 행복쉼터, 마을지붕정비, 마을경관정비, 행복담은 편지함, 권역안내판 등
 - 마을지붕정비공사 사업물량 감소
 - 지역역량강화 사업 : 교육, 선진지견학, 컨설팅, 홍보, 마을경영지원 등
10.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 (☎940-8257)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마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서』에 의거 ‘마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 승인하고,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마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면소재지의 정주 서비스 강화,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제고 하는 농촌계획 수립 및 면소재지의 기능 강화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면적 : 470.9ha (농경지 145.9ha, 임야 264ha, 기타 61ha)
4. 사업구역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일원
5. 가구 / 인구 : 275호(농가 163호, 비농가 112호), 인구 569명
5. 사업비 : 6,200백만원(국 4,340, 도 558, 군 1,302)
6. 사업기간(변경)
 - 당초 : 2014. 01. ~ 2018. 12.
 - 변경 : 2014. 01. ~ 2019. 06.
7. 시행자 : 거창군 (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9. 주요사업개요(변경)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리복합스포츠공원, 다목적광장, 소곡주차장 등
 - 복합스포츠공원 조경식재 및 기타 부대공사 변경
 - 지역경관개선사업 : 음식특화거리 조성, 안내판설치, 마리삼거리 정비, 마을별 경관개선사업 등
 - 음식특화거리 조성 손실보상협의 지연
 - 지역역량강화 사업 : 교육, 선진지견학, 컨설팅, 홍보, 마을경영지원 등
10.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 (☎940-8257)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19.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189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39-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2길 37	2009-04-01	2018-12-19	관청의 비용을 위한 땅이었다고 하는 옛지명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710-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2길 12	2009-04-01	2018-12-19	양기,음기를 덧골이라한데서 붙여진 법정리명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467-15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69-26	2009-04-01	2018-12-19	마을 뒤에 대밭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거리 1048-5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189	2009-04-01	2018-12-19	보해산이라는 산이름이 반영된 도로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으로 인한 정화조 폐쇄로 수거물량이 감소되고 인건비 등 원가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 있어 환경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조치요구 따라 원가를 산정한 결과 현실화율이 50%정도로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6(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인상 금액	인상율	
	수집·운반		처리	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0리터	122	174	15	137	189	52	37.9%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인상 금액	인상율	
	수집·운반		처리	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4,945	17,100	1,125	16,070	18,225	2,155	13.4%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011	1,150	150	1,161	1,300	139	11.9%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12. 18. ~ 2019. 1. 8.(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 전화번호 : 055)940-3514

- FAX : 055)940-3759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 수수료를 말함.
- ※ “처리”는 분뇨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0리터	122원	174원	15원	137원	189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4,945원	17,100원	1,125원	16,070원	18,225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011원	1,150원	150원	1,161원	1,3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동율 증대(1계열 ⇒ 2계열)에 따른 약품비 등 운영비 증가로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원가산정 결과 현실화율이 28%로 낮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2(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구 분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 금액	인상율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가축분뇨 (원/킬로리터)	16,000	18,000	10,000	6,000	8,000	2,000	12.5%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12. 18. ~ 2019. 1. 8.(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 전화번호 : 055)940-3514

- FAX : 055)940-3759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가축분뇨 (원/킬로리터)	16,000	18,000	10,000	6,000	8,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 계 법 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3. 24.]

보 상 계 획 열 략 공 고

거창군에서 시행예정인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14.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 대동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개설 L=4.4km, B=20.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80번지 외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 - 3592,3595)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결과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의거 3인 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시) 공탁

6.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붙임 : 의견서 >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 .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2. 개정이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 7. 1. 시행)에 따라 최저보험료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험료가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
⇒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4. 일부개정조례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8. 12. 14. ~ 2019. 1. 3. / 20일 이상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 3.(목)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 화 : 055)940-3133, FAX: 055)940-308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험료가 월 10,400원 미만”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u>보험료가 월 10,400원 미만인</u> 세대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u>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u> 세대를 말한다.</p>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193,1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096,57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7,46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10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 전통시장 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18.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행규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거창 전통시장 주차장 복층화사업	거창읍 중앙리 154 번지 일원	3,230.0	당초 3,192.0 변경 3,174.0	1,630.675	3,261.35	거창군고시 제83호 (2011.11.10)	

2. 사업 시행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432 3,256	3,192 3,174					
1	거창읍 중앙리	151-3 151-6	대 대	205 155	149 155		거창군			
2	거창읍 중앙리	150-3 150-5	대 대	139 101	104 101		거창군			
3	거창읍 중앙리	157-4	대	500	500		거창군			
4	거창읍 중앙리	159-3	대	165	165		거창군			
5	거창읍 중앙리	160-2	대	261	260		거창군			
6	거창읍 중앙리	160-3	대	172	172		거창군			
7	거창읍 중앙리	190-4 190-4	대 대	331 311	297 297		거창군			
8	거창읍 중앙리	190-2	대	231	231		거창군			
9	거창읍 중앙리	154	대	757	757		거창군			
10	거창읍 중앙리	150-4 150-6	잡 잡	443 375	396 375		거창군			
11	거창읍 중앙리	152-8	잡	115	60		국(재무부)			
12	거창읍 중앙리	152-6	잡	86	79		거창군			
13	거창읍 중앙리	160-11	도	7	2		거창군			
14	거창읍 중앙리	156-2	도	20	20		거창군			

거창군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정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방재시설:정장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20.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사업
 - 나) 명 칭 : 정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 사업규모(변경없음)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폭원 (m)	시 행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연장 (m)	폭 (m)	면 적 (㎡)	시행 구간		
군 계 획 시 설	정장천	지방 하천	거창읍 장팔리 1462-1	거창읍 정장리 1452-33	4,300	10~40	1,640	15~20	41,693	거창읍 정장리 1013번지 일원	거창군 고시 제2008-43호 (2008.9.25)	사업기간 변경

4. 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가)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나) 성명 : 거창군수(안전총괄과장)

5. 사업기간

○ 당초 : 2015. 5. 14 ~ 2018. 06. 02.

○ 변경 : 2015. 5. 14 ~ 2019. 07. 31.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